

# 경로당 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 개발과 평가

- 서울 서초구 구립경로당을 중심으로 -

## Developing a Checklist and Evaluation of Public Senior Centers

- Focused on Seocho-gu Seoul Public Senior Center -

**Author** 권혜진 Kwon, Hye-Jin /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박사  
신경주 Shin, Kyung-Joo / 편집이사,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학술박사\*

**Abstract** This research tried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Gyongrodangs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oldest old through revitalization of the existing senior centers. With 31 national and public Gyungrodangs in Seocho-gu, Seoul as research subjects, the research contents include a survey of the facilities including main exit doors, living rooms and lounges, kitchens, and rest rooms in the Gyungrodangs by the checklist, and as the research tool a laser finder, measuring tapes, and cameras were used. The checklist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to investigate main exit doors, living rooms and lounges, kitchens, and rest room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presented. The safety-related items of the public Gyungrodang facilities were reaching a critical level. They need to equip emergency exit routes, install exit lights and alarm bells, and teach how to use them. After that, the issue of rest room would be raised; the oldest old had difficulty in using the rest room with no consideration of universal design(UD), so installation of grab bars is needed around toilets, washstands, and urinals. Besides them, although absence of the western style furniture without consideration of users' ages caused inconvenience of using, there are no solutions due to the limited space. Unnecessary equipment such as treadmills which only occupy spaces without users should be thrown away and replaced with the furniture people would use like tables with supplement of furnitures to lie down and rest. Overall, the current Gyongrodang Facilities lack systems and need standardized management, in which the checklist this researcher developed and used in evaluating the present conditions could be recommended. It is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system of senior centers would be arranged through this checklist, so that systematic service supply could be possible in the better facility environment.

**Keywords** 서울, 초고령, 구립경로당, 체크리스트  
Seoul, Oldest Old, Public Senior Center, The Checklis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급속히 진행되는 노인의 수적증가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나 사회와 가정의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행하는 교육받은 자에 의한 방문 간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sup>1)</sup>를 받을 수 있고, 데이케어 센터도 일부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판정에 속하지 못한 많은 초고령 노인들은 정부나 사회의 손길에서 소외된 채 가정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거나, 가

끔 방문하는 가족에 의해 돌보아진다. 그러므로 정부관점에서는 건강 노인층에 속하나 스스로의 일상생활 자체에 부담을 느껴 '죽는 날을 기다린다고 표현하는 노인층'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 등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시설 기준 등)에 의해서 재가 급여서비스를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제공 혹은 대여 서비스를 저렴한 본인부담금(무료-15%내)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2015
- 2) 데이케어센터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주, 야간 보호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로 노인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자가 이용하며 이용시간은 09시~18시 정도까지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 2015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jshin@hanyang.ac.kr

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의무 공급되고 있는 경로당 수는 전국 6만3천283개로 평균 연령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은 이곳에서 겨우 한끼 식사를 제공받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재의 경로당시설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안이 찾아진다면 새로운 시설 투자에 드는 노인복지 비용을 경감하면서 가정에서는 노인 부양 부담이 줄며, 초고령 노인은 익숙한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고, 정부는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로 초고령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시 서초구의 구립 경로당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용자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얻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 수단으로 시설환경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존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보았다. 그리고 초고령 노인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공간별 시설조사를 실시하고 구립 경로당의 현안평가를 시도한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구립 경로당 시설 31곳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레이저 측정기 및 줄자, 사진기와 현안 평가용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연구내용은 체크리스트에 의한 경로당시설의 현안 평가 및 검토와 시설의 공간별 면적산정이었다.

첫째, 경로당의 시설 및 허가기준, 시설의 분포와 연면적, 개원시기, 남 여회원수 등을 검토한다.

둘째, 경로당시설의 현안 평가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셋째, 개발한 체크리스트로 경로당 현안을 검토한다.<sup>3)</sup>

## 2. 서울시 서초구 구립 경로당의 현황

### 2.1. 경로당의 시설 기준

경로당(敬老堂)이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집이나 방’으로 정의하였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에서는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여가 시설에 속하는데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 대상이다. 시설의 소속은 대한노인회로 시설의 신고 및 허가는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고 있었다.

경로당의 2015년 시설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 1항 별표7)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의 회원(읍,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회원)과 거실 및 휴게실 면적 20㎡ 이상,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시설과 회원 수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허가되면 정부의 최소 지원을 받는다.

현재 경로당은 허가 기준이 단순하고, 관리기준이 없으며, 지원 역시 미흡하여 초고령 노인의 최소 점심(무료 혹은 실비)과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sup>4)</sup> 서울은 노인 356명당 시설1개, 전국으로 보면 98.8명당 시설 1개로 서울의 경로당수가 가장 부족하여 현재 시설의 활용과 함께 증설 방안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다.

### 2.2. 경로당의 시설 분포와 회원 수

<표 1> 조사대상 구립경로당 시설의 현황

시설 번호	동별	시설명	연면적 (㎡)	개원시기 (년)	회원 수(명)		
					계	남	여
1	반포	반포1동	50.1	1981	46	0	46
2		반포2동	90.9	1992	20	0	20
3		반포3동	133.7	1995	42	20	22
4		반포4동	116.6	2004	36	0	36
5		반포복지관	122.3	1992	52	27	25
6		반포본동	60.8	1985	34	0	34
7	잠원	잠원동	117.0	1994	54	21	23
8	방배	기념당	80.3	2005	20	0	17
9		방배1동	178.5	1990	50	30	20
10		방배2동제1	52.0	1995	27	0	27
11		방배2동제2	55.1	1985	32	6	26
12		방배3동제1	64.7	2000	50	5	45
13		방배3동제2	91.6	1997	22	2	20
14	서초	방배4동	108.7	1998	53	33	20
15		명달	49.7	1998	25	5	20
16		서초1층	122.6	1990	33	12	21
17		서초2동	133.2	2002	50	20	30
18		서초3동	83.0	1995	40	20	20
19		예술의 마을	84.6	1989	45	11	34
20	양재	장안	198.0	1993	25	5	20
21		동산마을	83.8	1998	80	48	32
22		말죽거리	71.5	1986	30	14	16
23		새원마을	111.1	2002	27	12	15
24		송동마을	126.0	1997	32	5	27
25		암산	90.0	1995	43	17	26
26	내곡	우면동	70.0	1995	23	3	20
27		잔디마을	71.6	1998	30	0	30
28		능안마을	103.7	2003	30	12	18
29		본마을	140.0	2010	47	20	27
30		염곡	180.0	1995	46	24	22
31		홍씨마을	116.5	1986	31	15	19
평균			101.8	1995	37.9	15.5	22.4

조사대상 경로당 시설의 동별 분포, 연면적, 개원시기 및 회원 수를 <표 1>에 제시한다. 서초구에는 6개 동에 동별로 1~7개의 경로당이 있었다. 가장 많은 곳은 방배

3) 현황점수를 부여(3점: 있고 적당함, 2점: 있으나 적당하지 않음, 1점: 없음, 0점: 해당 없음)하여, 총점과 평균으로 경로당시설 평가를 했다(객관화된 조사를 통한 상대적 평가의 수치화를 위하여 점수 부여를 하였음)  
4) 경로당 시설 수(2014년)는 전국에 6만3천258개가 있으며 그 중 서울시에 3천2백71개가 있다. 경기도가 9천4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으로 8천6백41개, 경북 7천6백40개이고 서울은 3천2백71개로 전국에서 7번째다. 도시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경로당 수가 비례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www.mw.go.kr

동과 양재동이 7곳이었고, 가장 작은 곳은 잠원동이 1곳으로 평균 6.2곳이었다. 연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서초동의 명달경로당 49.7㎡이었고, 가장 큰 곳은 방배동의 방배1동 경로당 178.5㎡로 3.5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개원 시기는 가장 빠른 곳이 반포동의 반포1동 경로당으로 1981년이고 가장 늦은 곳은 내곡동의 본마을 경로당으로 2010년이었다. 가장 많이 건립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전후로 약 50%가 이때 건립되었고 그 이전 시설을 합하면 약 20-30년이 경과된 노후화 된 건물이 75% 이상으로 많아서 건물 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회원 수는 남성회원 없이 여성 회원만 있는 곳이 7곳, 남녀 회원이 있는 곳이 24곳 이었다. 이중 남성 회원이 극단적으로 작은 곳이 9곳으로 반수 정도가 남녀 비슷한 회원 수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설 평균 회원은 37.9인(여성22.4인, 남성15.5인)이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여성이 더 사교적으로 이런 시설 이용이 활발하여 여성 회원 위주의 공간 배려가 필요함을 반증했다.

### 2.3. 경로당 시설의 공간별 면적 현황

실제 공간 크기를 연구자가 작성한 31개 시설의 도면에 기초하여 시설별로 아래 <표 2>에 산정하여 정리하였다. 거실의 크기는 평균 70.34㎡, 주방은 8.15㎡, 화장실은 6.18㎡이었다. 전체 시설의 평균 면적은 84.67㎡이나 여기에서 각 실이 전용실로 분리된 것을 감안하면 크기가 줄므로 실제 경로당 시설이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 3. 체크리스트 개발

### 3.1. 체크리스트 항목선정

경로당시설의 환경 평가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경로당 공간은 크게 주출입구, 거실 및 휴게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므로 이 공간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이에 먼저 주출입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이용한 자료는 일본의 ‘고령자와 신체장애자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휠체어사용자의 주거환경디자인(2002)’과 ‘하트빌 법, ‘배정외의 8인(2011)의 본문 중 안전시설의 항목을 참조하여 안전성에 관한 항목에 추가하여 구성하였다.<표 4>5)

<표 2> 시설의 공간별 산정된 면적 현황

구분	면적(㎡)			
	거실	주방	화장실	합계
1	25.4	12.0	4.0	41.4
2	79.8	2.8	1.7	84.3
3	128.0	3.6	2.1	133.7
4	95.0	4.0	9.0	108
5	105.0	6.0	4.0	115
6	12.0	6.0	3.5	21.5
7	70.0	7.5	4.0	81.5
8	60.8	10.2	6.0	77
9	129.0	20.0	6.7	155.7
10	43.3	3.0	4.0	50.3
11	37.0	3.0	5.0	45
12	50.0	5.0	5.6	60.6
13	31.0	13.5	5.4	49.9
14	79.0	11.0	6.0	96
15	37.0	4.0	3.0	44
16	105.0	6.6	6.0	117.6
17	97.0	17.0	8.0	122
18	40.0	9.0	4.0	53
19	60.0	8.0	7.2	75.2
20	135.0	6.0	10.0	151
21	65.0	5.5	4.0	74.5
22	23.5	9.7	3.5	36.7
23	55.0	13.2	8.0	76.2
24	92.0	8.0	9.0	109
25	50.0	13.0	9.8	72.8
26	55.0	3.0	5.3	63.3
27	53.0	4.5	6.8	64.3
28	75.0	9.2	6.5	90.7
29	105.0	8.0	12.0	125
30	145.0	16.0	15.0	176
31	43.0	4.5	6.5	54
평균	70.34	8.15	6.18	84.67

다음은 거실 및 휴게실에 관한 체크리스트는 국내외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의 관련 선행연구6) 고찰하여 김륜하(2004)의 설문지에서 평가항목, 배정외의 8인(2011)의 본문 중 안전시설의 항목을 참조하여 구성 하였다.

주방에 관한 체크리스트는 김륜하(2004)의 설비 비품 리스트에 관한 항목을, 조리대 길이와 배치 등은 이정규

- 5) (1) ‘고령자와 신체장애자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 일본 법무성 www.moj.go.jp
-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 편의법)’, 법률 제13109호, 2015.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3) 산업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2002), 휠체어 사용자의 주거환경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 p.210(현관), p.214(거실), pp.216-224(주방), pp.227-233(화장실)등.
- (4) ‘하트빌 법’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차 강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과 지도 지원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출입구, 욕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고령자, 신체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나카 나오토 편 저, Universal Design of Environment, UDRC, 2008, pp.22-23 & 노무라미도리편, 배리어 프리 건축. 도시계획론, 건국대출판부, 2009, pp.32-34
- 6) (1) 김륜하(2004), 경로당 주거공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5, pp.54-57
- (2) 김선영(2013), 아파트 경로당의 공간구성 특성과 이용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인제대 석사논문, pp.57-58
- (3) 배정외 8인(2011), 부산시 경로당의 안전시설현황조사, 한국 위기관리논집 7권 1호, pp.216-22
- (4) 노무라미도리편, 배리어 프리 건축. 도시계획론, 건국대출판부, 2009, pp.76-77

(2014)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그 외 노무라 미도리편(2009)의 부엌·가사공간을, 화장실에 관한 체크리스트는 김륜하(2004), 이정규(2014)를 참고하고, 노무라 미도리편(2009)의 위생공간에 배정이외 8인(2011)의 본문 중 안전시설의 항목을 참조하여 구성 하였다.7)

그 외 사용 중인 가구의 종류나 크기, 벽지, 바닥재, 천정의 종류, 조도 등 실내 환경에 관한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일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 공간별로 연구자가 추가하였다.8)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체크리스트 개발과정의 문항개발에 사용한 내용정리

구분	세부 내용	
주출입구 (10문항)	경사로, 엘리베이터 유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본의 '고령자와 신체장애자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휠체어사용자의 주거환경디자인(2002)', '하트빌 법'
	주 출입구 문, 현관의 크기	김선영(2012)의 논문-설문지
	야간조명 설치	부산시 경로당의 안전시설현황조사(2011)환경안전조사항목-실외
	비상구, 비상구 표시점등, 2층 이상일 경우 구조대의 유무	부산시 경로당의 안전시설현황조사(2011)환경안전조사항목-소화/대피시설
	비상시 대피도	연구자가 추가
거실 및 휴게실 (14문항)	실의 크기, 이중창 여부, 온도 조절기, 조명의 위치 및 형태, 밝기	김륜하(2004)의 논문-설문지
	창의 위치 및 크기, 수납장	김선영(2012)의 논문-본문 (p.52 참조)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 종류 및 색상, 입식 가구의 종류 및 수량, 남/여의 구분	연구자가 추가
	긴급전화번호, 안전수칙, 전선의 정리 상태	부산시 경로당의 안전시설현황조사(2011)환경안전조사항목-거실/방
주방 (11문항)	실의 크기, 배치순서, 높이, 조명의 위치 및 형태	김륜하(2004)의 논문-설문지
	조리대 길이	이정규(2014)의 논문-부록
	수납 식별 가능한 수납장의 크기와 개수, 조리기구용 콘센트	노무라 미도리편(2009)-부엌, 가사공간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 종류 및 색상	연구자가 추가
화장실 (12문항)	전선의 정리 상태	부산시 경로당의 안전시설현황조사(2011)환경안전조사항목-거실/방
	조명의 위치 및 밝기, 형태, 문의 형태, 창문, 환기 팬, 세면대의 종류 및 높이, 설치 개수, 난방 여부	김륜하(2004)의 논문-설문지
	남/여의 구분, 바닥, 벽, 천정 마감재의 종류 및 색상	이정규(2014)의 논문-부록, 노무라 미도리편(2009)-위생 공간
	안전손잡이, 비상벨	연구자가 추가
	부산시 경로당의 안전시설현황조사(2011)환경안전조사항목-욕실/화장실	

이 개발된 체크리스트 세부항목의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조사대상 경로당시설 3곳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현장 실측조사를 하였다. 이 예비 조사를 통하여 경로당의 시설 환경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수정, 삭제하는 한편,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최종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9)

최종적으로 개발된 체크리스트의 항목 구성은 주출입

구 12개, 거실 및 휴게실 14개, 주방 12개, 화장실 12개로 총 50개의 세부항목이었다.

<표 4> 출입구관련 유니버설 디자인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 정리

항목	설치내용	평가기준	일본	한국	
출입구	높이	단차	높이 차가 3cm 이하	의무	의무
		유효폭	1.2m 이상	의무	의무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의무	의무
		손잡이	경사로 길이 1.8m 이상, 높이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연속설치	의무	의무
		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처리	의무	의무
	엘리베이터	활동공간	1.4m×1.4m 이상	의무	의무
		크기	유효 바닥면적 1.1m×1.35m 이상	의무	의무
		점자표지판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 부착	의무	의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기타	운행상황표시(점멸등, 음향신호설치)	의무	의무
		설치장소	주출입구와 가까이 위치	의무	의무
주차공간		3.3m×5m 이상 평행식은 2m×6m 이상	의무	의무	
유도/표시		유도블록을 주차공간에서 출입구까지 설치	의무	의무	

### 3.2. 개발된 체크리스트의 세부 구성

최종 개발된 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을 <표 5>에 제시 하였다.

첫째, 주출입구는 일반사항으로 주출입구 문 설치여부, 경사로, 야간조명, 엘리베이터 유무, 현관의 크기에 관한 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안전사항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상구, 비상구 표시점등, 2층 이상일 경우 구조대의 유무, 비상 대피도의 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거실 및 휴게실은 일반사항으로 실의 크기, 창의 위치 및 크기, 이중창여부,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 종류 및 색상, 온도 조절기, 수납장, 입식 가구의 종류 및 수량, 남/여의 구분, 조명의 위치 및 형태, 밝기에 관한 1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안전사항으로 긴급전화번호, 안전수칙, 전선의 정리 상태에 관한 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주방은 일반사항으로 실의 크기, 조리대길이, 배

- (1) 김륜하(2004), 경로당 주거공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5, pp.54-57
- (2) 이정규(2014), 경로당 공간 유형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과기대 석사논문, 2014, pp.57-63
- (3) 김선영(2013), 아파트 경로당의 공간구성 특성과 이용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인제대 석사논문, p.57, p.58
- (4) 노무라미도리편, 배리어 프리 건축. 도시계획론, 건국대출판부, 2009, pp.76-77
- (5) 일반시설에서 연구자가 추가한 항목은 마감재 색상, 입식가구의 종류 및 수량, 남/여의 구분, 조리기구용 콘센트, 난방여부 등이며, 안전시설에서 연구자가 추가한 항목은 비상시 대피도이다.
- (6) 부적합하여 삭제한 항목은 현관문의 안전고무, 문의 형태(미닫이/여닫이), 손잡이형태(레버식/핸들식), 문턱의 적정높이 등이며, 추가한 항목은 구조대, 전선의 정리 상태이었다.

치순서, 조리대높이, 수납 식별 가능한 수납장의 크기와 개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 종류 및 색상, 조리용 콘센트, 조명의 위치 및 형태, 밝기의 1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안전사항으로 전선의 정리 상태에 관한 1개 세부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화장실은 일반사항으로 문의 형태, 창문의 유무, 환기팬의 유무, 남/여의 구분, 난방 여부,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 종류 및 색상, 조명의 위치 및 형태, 밝기, 세면대의 종류 및 높이, 설치 개수에 관한 10개 세부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전사항으로 안전손잡이, 비상벨에 관한 2개 세부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 개발된 구립 경로당시설 조사용 체크리스트 항목

구분	세부 내용
주출입구 (10문항)	일반시설 주출입구 문, 경사로, 야간조명, 엘리베이터 유무, 현관의 크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전시설 비상구, 비상구 표시점등, 2층 이상일 경우 구조대의 유무, 비상시 대피도
거실 및 휴게실 (14문항)	일반시설 실의 크기, 창문의 위치 및 크기, 이중창 여부,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 종류 및 색상, 온도 조절기, 수납장, 입식 가구의 종류 및 수량, 남/여의 구분, 조명의 위치 및 형태, 밝기
	안전시설 긴급전화번호, 안전수칙, 전선의 정리 상태
주방 (11문항)	일반시설 실의 크기, 조리대 길이, 배치순서, 높이, 수납 식별 가능한 수납장의 크기와 개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 종류 및 색상, 조리기구용 콘센트, 조명의 위치 및 형태
	안전시설 전선의 정리 상태
화장실 (12문항)	일반시설 문의 형태, 창문, 환기 팬, 남/여의 구분, 난방 여부, 바닥, 벽, 천정 마감재의 종류 및 색상, 조명의 위치 및 밝기, 형태, 세면대의 종류 및 높이, 설치 개수
	안전시설 안전손잡이, 비상벨

#### 4. 체크리스트에 의한 시설 평가 결과

##### 4.1. 주출입구의 평가기준과 결과

주출입구에 대한 분석 기준을 <표 6>에,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주출입구의 문은 많은 시설에서 투명유리로 내부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주택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일부 시설은 일반 대문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으나, 데이케어센터와 함께 사용 중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상시 열려있어 시설 진입에 문제가 없어 3점 만점에 평균 2.71(90.3%)로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시설은 8/31곳으로 주차가 힘들었다. 또한 프로그램 교육자나 보건소 직원이 차량으로 시설을 방문하므로 사실상 일반인의 주차구역이 없어 평균 1.9점(63.3%)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6> 주출입구의 분석 기준

구분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내용	표기
주출입구 문	투명유리로 되어 내부가 보여 접근성이 좋음	■	철문으로 되어 현관까지 내부 접근성이 좋지 않음	□	설치 되어 있지 않음	X	해당 없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구역 있음	■	주차 가능하나 구역표기 없음	□	주차 불가능	X	해당 없음	/
주출입구 경사로	경사로 있음	■	-	□	경사로가 없음	X	해당 없음	/
야간조명	야간조명 있음	■	기구가 있으나 제 기능을 수행 못하는 상태	□	야간 조명 기구 없음	X	해당 없음	/
현관의 크기	있고 적당한 넓이	■	있으나 좁은 넓이	□	-	X	-	/
엘리베이터	있음	■	-	□	없음	X	2층 이상 없음	/
비상구	있음	■	비상구로 이용할만한 구가 있음	□	비상구로 이용할만한 출구가 없음	X	-	/
비상 대피도	있음	■	비상대피도는 있으나 내용이 틀림	□	없음	X	-	/
비상구 표시점등	있음	■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함	□	없음	X	-	/
2층 이상 구조대	-	■	-	□	있어야 하지만 없음	X	-	/

■:있고 적당함(3점), □:있으나 적당하지 않음(2점), X:없음(1점), /:해당없음(0점)

주출입구 경사로는 2/3시설에서 갖춰져 있으나 기준미달이거나 출입구까지 단차가 없어 필요가 없었다.(2점, 66.6%) 주출입구에 야간용 조명은 3곳을 제외하고 모두 갖춰져 있었으나 몇 시설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제 기능을 못하여 평균 2.71(90.3%)이었다. 현관의 크기는 이용자들이 신발장에 신발을 넣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는 적었고 대부분은 적당한 크기였다.(2.71점,90.3%)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2, 3층 건물로 허가에 필요하지 않았으나, 이용자가 노인으로서 UD측면으로 보면 있거나 장애인용 리프트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고, 데이케어센터와 건물을 함께 사용 중인 1곳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2층을 데이케어센터가 사용하여 경로당과 관계없어 평균 1.07점(35.6%)으로 낮았다.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구가 설치된 곳 2곳, 비상구로 이용할 수 있는 뒷문이나 발코니가 있는 시설을 포함하면 15곳으로, 나머지 16곳은 비상구로 사용할 문조차 없어 평균 0.93점(31.0%)으로 낮았다. 비상대피도가 있는 시설은 대상 경로당 31곳 중 2곳으로, 그 중 한곳은 비상대피도와 실제 공간의 상태가 맞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였다.(평균 1.1점, 36.6%)

<표 7> 조사대상 구립경로당 주출입구의 현황 평가 결과

시설 번호	주출입문	주차구역	경사로	야간 조명	현관의 크기	엘리베이터	비상구	비상 대피도	비상구 점등	구조대	합계
1	□	■	X	□	■	X	■	X	X	/	15
2	■	□	/	□	■	X	X	X	X	/	14
3	■	X	■	■	■	X	X	X	X	X	17
4	■	□	■	■	■	X	X	X	X	X	18
5	■	■	X	■	□	X	X	X	X	X	16
6	■	■	X	■	□	X	■	X	X	X	18
7	■	■	/	■	■	X	X	X	X	X	16
8	■	■	■	■	■	X	□	X	X	/	20
9	■	X	■	■	□	X	□	X	X	X	17
10	□	□	X	■	□	X	□	□	X	/	15
11	■	□	■	■	■	■	□	■	■	/	25
12	■	□	■	■	■	X	X	X	X	/	18
13	□	□	X	■	■	X	□	X	X	/	16
14	■	□	/	■	■	X	X	X	X	X	15
15	■	■	■	■	■	/	□	X	X	/	19
16	■	X	■	■	■	X	□	X	X	X	18
17	■	■	□	□	■	X	X	X	X	X	17
18	□	X	X	■	■	X	X	X	X	X	14
19	■	□	■	■	□	X	□	X	X	X	18
20	□	X	X	X	■	X	□	X	X	X	13
21	■	X	■	■	■	X	X	X	X	X	17
22	□	□	X	■	□	X	□	X	X	X	15
23	□	X	■	■	■	/	□	X	X	/	16
24	■	□	□	■	■	X	X	X	X	X	17
25	□	X	■	X	■	/	X	X	X	/	13
26	■	■	X	■	■	X	X	X	X	/	17
27	■	□	■	■	■	/	X	X	X	/	17
28	■	X	■	■	□	X	X	X	X	X	16
29	■	■	□	■	■	X	□	□	X	/	20
30	■	X	■	■	□	X	□	X	■	/	19
31	■	□	□	X	□	X	X	X	X	X	14
합계	2.71 (90.3)	1.90 (63.3)	2.00 (66.6)	2.71 (90.3)	2.71 (90.3)	0.93 (31.0)	1.55 (51.6)	1.10 (36.6)	1.16 (38.6)	0.54 (18.0)	16.77 1.59

비상구 표시등이 있는 곳은 3곳이고, 그 중 1곳은 주출입구만 있고 그 외에 비상구로 사용 가능한 곳이 없었으나 주출입구 위에 비상구 표시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구로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28개 시설에는 비상구 표시등이 없어 평균 점수 1.16(38.6%)으로 매우 낮았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초고령 노인은 비상시 완전히 타인의 대피 도우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고 시설이 2층이라 하더라도 비상시에 뛰어 내릴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구조대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층 이상의 시설 중 한곳도 구조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0.54점, 18%)

#### 4.2. 거실 및 휴게실의 평가 기준과 결과

거실 및 휴게실에 대한 분석 기준을 <표 8>에,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거실의 크기는 이용자들이 사용가능한 입식 가구(소파 등)가 설치되어 있고, 이용자 15명 정도가 한 공간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는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13곳은 적당하였고, 나머지 18곳은 좁아서 평균 2.35점(78.3%)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표 8> 거실 및 휴게실의 분석 기준

구분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내용	표기
거실의 크기	있고,적당한 넓이	■	있으나, 좁은 넓이	□	-	X	-	/
방의 크기	있고,적당한 넓이	■	있으나, 좁은 넓이	□	시설에는 있으나, 공간이 없음	X	시설 없음	/
이중창	창의크기도 적당하고이중창이다	■	창의크기가 부적당, 이중창 아님	□	-	X	-	/
바닥 마감재	바닥마감재로 적당한재로 사용	■	바닥마감재로 부적당한재로 사용	□	-	X	-	/
벽마감재	벽마감재로 적당한재로 사용	■	벽마감재로 부적당한재로 사용	□	-	X	-	/
천정 마감재	천정마감재로 적당한재로 사용	■	천정마감재로 부적당한재로 사용	□	-	X	-	/
남/여의 구분	남/여의 구분이 있다.	■	아코디언 접이문으로, 실구별 있음	□	남/여의 구분이 없다	X	여성전용시설 구분 필요없음	/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음	■	아파트중앙 난방시스템 조절불가	□	-	X	-	/
수납장	수납공간이 적당한 수납장설치	■	부적당한 크기 수납장 설치	□	수납장이 없음	X	-	/
입식가구(소파)	수용인원과 수량이 적당하다	■	수용인원과 수량미만 맞음	□	입식 가구가 없음	X	-	/
전선의 정리	전선정리가 잘되어있음	■	위험한 위치에 노출전선 있음	□	-	X	-	/
조명	설치되어 있음	■	-	□	-	X	-	/
긴급전화번호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되었음	■	잘 안 보이는 사람 속 등에 보관	□	-	X	-	/
안전수칙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되었음	■	잘 안 보이는 사람 속 등에 보관	□	-	X	-	/

■:있고 적당함(3점), □:있으나 적당하지 않음(2점), X:없음(1점), /:해당없음 (0점)

방의 크기는 소수의 이용자가 누워서 휴식 할 공간이 있으면 적당한 것으로 보았고, 시설에는 있으나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아닌 경우와 시설이 거실, 주방, 화장실로만 구성되어 방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방 공간이 있는 곳이 10곳인데, 그 중 1곳은 방을 창고로 사용하여 이용할 수 없었으나 평균 0.93점(31%)이었다. 경로당의 거실은 노인들의 주생활 공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이곳의 냉난방 문제는 시설의 이용 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냉난방 효율을 위해서 이중창이 필수이다. 창 의 크기도 중요한데 창 의 크기가 채광에 적당하고, 냉난방의 유지에 적절해야 시설의 냉난방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중창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조사대상 31개 경로당 시설 중 5곳의 거실 창이 이중창이 아니나 26/31이 이중창으로 평균 2.81점(93.6%)으로 잘 갖춰졌다고 판단하였다. 바닥 마감재와 벽 마감재, 천정 마감재는 거실에 사용이 적절하고 쉽게 오염이 되지 않으며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적절한 재료 사용인지를 보았다. 모든 시설에서 방화 시에 비교적 안전하여 방화벽지로 사용하는 종이벽지를 사용하여 바닥, 벽, 천정 마감재 점수는 2.97(99%)로 모든 시설이 잘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표 9> 조사대상 구립 경로당 거실 및 휴게시설 현황 평가 결과

시설 번호	거실의 크기	방의 크기	이중창	바닥 마감재	벽 마감재	천정 마감재	남/여 구분	온도 조절기	수납장	입식가구	전선의 정리	조명	긴급전화번호	안전수칙	합계
1	□	■	□	■	□	□	/	■	□	□	□	■	□	□	30
2	■	□	■	■	■	■	/	■	□	□	■	■	■	■	36
3	□	/	■	■	■	■	■	■	■	□	■	■	■	■	37
4	□	/	□	■	■	■	■	■	□	■	■	■	■	■	36
5	□	/	■	■	■	■	■	■	■	□	■	■	■	■	37
6	□	■	□	■	■	■	/	□	X	X	■	■	■	■	32
7	□	/	■	■	■	■	■	■	□	□	■	■	■	■	36
8	■	/	■	■	■	■	/	■	■	□	■	■	■	■	35
9	■	/	■	□	■	■	■	■	■	X	□	■	■	■	35
10	■	■	■	■	■	■	/	■	□	■	■	■	■	■	38
11	□	/	■	■	■	■	X	■	□	□	■	■	■	■	34
12	□	/	■	■	■	■	X	■	X	X	■	■	■	■	32
13	□	■	■	■	■	■	X	■	■	X	■	■	■	■	37
14	■	/	■	■	■	■	■	■	■	X	■	■	■	■	37
15	□	/	□	■	■	■	/	■	■	□	■	■	■	■	33
16	□	/	■	■	■	■	X	■	■	□	■	■	■	■	35
17	■	■	■	■	■	■	■	■	■	□	■	■	■	□	38
18	□	■	■	■	■	■	X	■	□	□	■	■	□	□	35
19	/	/	■	■	■	■	■	■	□	□	■	■	■	■	34
20	■	/	□	■	■	■	■	■	□	□	■	■	■	■	36
21	□	/	■	■	■	■	■	■	■	■	■	■	■	■	38
22	■	■	■	■	■	■	X	■	X	■	■	■	■	■	38
23	■	■	■	■	■	■	X	■	■	X	■	■	■	■	38
24	□	/	■	■	■	■	■	■	□	□	■	■	■	■	36
25	□	/	■	■	■	■	■	■	X	□	■	■	■	■	35
26	■	/	■	■	■	□	■	■	□	□	■	■	■	■	36
27	□	/	■	■	■	■	■	■	□	□	■	■	□	□	34
28	■	/	■	■	■	■	■	■	■	□	■	■	■	■	38
29	■	■	■	■	■	■	X	■	□	□	■	■	■	■	38
30	■	/	□	■	■	■	■	■	X	□	■	■	■	■	35
31	□	/	■	■	■	■	X	■	■	X	■	■	□	□	32
합계	2.35 (78.3)	0.93 (31.0)	2.81 (93.6)	2.97 (99.0)	2.97 (99.0)	2.97 (99.0)	1.83 (61.0)	2.97 (99.0)	2.19 (73.0)	1.90 (63.3)	2.94 (98.0)	3.00 (100)	2.84 (94.6)	2.84 (94.6)	2.70 33.16

시설의 남녀의 구분은 여성전용시설 6곳을 제외하고 전용실의 구분이 되어있는가를 보았다. 15곳은 구분이 되어 있었고 10곳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는 1.83(61%)로 많이 낮아서 절반 가까운 시설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온도조절기는 아파트에 위치한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단독 건물로 개별난방을 하므로 설치되어 있어(30/31), 평균 2.97점(99%)으로 잘 갖추어졌다.

거실에 이용자가 입고 온 옷이나 기타 물건들의 보관 용 거실 수납장 설치여부와 크기의 적절함을 확인하였으며 평균 2.19점(73%)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소파 등의 입식의자가 공간의 협소함으로 설치되지 못한 곳이 7곳, 있으나 수량부족으로 편하게 이용 할 수 없는 곳이 20곳으로 4곳만 이용자 대비 적절한 수량의 입식자구가 거실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용자들의 연령과 이용행태를 고려하면 입식자구의 수량이 이용자의 수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므로 시설공간의 협소로 설치 못한 공간은 이용자가 분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다. 시설의 확장이나 시설의 확충도 고려해 보기를 권하며 평균 점수는 1.9(63.3%)로 입식자구가 있으나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거실의 전선 정리 상태는 2곳을 제외하고 양호하며, 2곳은 위험한 위치에 전선이 노출되어 있어서 평균 2.94점(98%)으로 잘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거실의 조명은 크기와 수량이 적절한지를 보았는데 모든 시설이 만족할 수준으로 평균 3점 만점(100%)이었다.

시설이 위험상황 일 때 위험을 알릴 긴급 전화번호와 안전에 관한 설명이 있는 안전수칙은 5곳을 제외하고 모두 잘 보이는 벽에 부착되어있었다.(5곳은 서랍 속에 있음을 운영자를 통해서 확인함) 긴급 전화번호와 안전 수칙 표는 평균 2.84(94.6%)로 잘 갖추었다 판단하였다.

### 4.3. 주방의 평가 기준과 결과

주방의 분석 기준을 <표 10>에,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주방의 크기는 노인 두 사람이 함께 작업 할 수 있는 공간 폭으로 작업대의 길이가 적당하며, 주방도구 수납이 가능한 크기인지를 보았다(일반기준 1m보다 소폭 큰 기준). 대상 경로당 31곳 중 15곳은 적당하고 16곳은 좁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상태이므로 평균 2.50점(83.3%)으로 반 정도의 시설은 문제가 없었다.

주방의 작업대는 적당한 길이로 작업이 용이한지를 보았는데, 15곳은 적절한 길이 이상을 갖추었고, 16곳은 미달이었다. 평균 2.48점(82.6%)으로 보통으로 판단되었다. 작업대의 배치순서는 개수대와 가열대 사이에 조리대 공간이 있는지를 보았는데 적합 20곳, 부적절한 11곳은 개수대와 가열대가 붙어 있었다. 평균 2.65점(88.3%)으로 대체로 갖추었다 판단하였다. 작업대 높이는 노인의 평균 신장을 고려하여 800mm이상을 적절한 높이로 보았는데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절하였다.(2.97점, 99%) 부엌의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사용하기 적절한가

를 판단하였고, 벽 마감재는 도기질 타일을 사용하여 오염과 습기, 열기에 견딜 수 있는 재료인지 확인하였다.

<표 10> 주방의 분석 기준

구분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내용	표기
주방의 크기	있고, 적당한 넓이	■	있으나 좁은 넓이	□	-	X	-	/
조리대 길이	조리대 길이가 1.8M이상이어서 사용하기적절함	■	조리대 길이가 1.8M미만이어서 사용하기 불편함	□	-	X	-	/
배치순서	준비대-개수대-조리대-가열대-배선대순서로 배열되어있음	■	조리대의 순서에서 개수대와 가열대 가나란히 배열되어있음	□	-	X	-	/
조리대 높이 <sup>10)</sup>	이용자 신장을 고려, 적당한 높이(800mm)	■	높이가 낮아 사용하기 불편함(760mm)	□	-	X	-	/
바닥 마감재	벽 마감재로 적당한 재료 사용	■	-	□	-	-	-	-
벽 마감재	주방 마감재로 도기질 타일 설치	■	주방 벽 마감재로 필름설치	□	-	X	-	/
천정 마감재	천정 마감재로 적당한재료	■	천정 마감재로 부적절한재료설치	□	-	X	-	/
조명	설치되어 있음	■	설치되어 있으나 제 기능을 수행 못함	□	-	X	-	/
입식 식탁	식탁으로 사용가능함	■	있으나, 식탁으로사용 불가능함	□	입 식 탁	X	-	/
수납장	주방용 수납장으로 공간정리에 도움주는 크기의 것이 설치되었음	■	공간의 정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크기의 것이 설치되었음	□	수 납 장 이	X	-	/
전선 정리	전선의 정리가 잘 되어 있음	■	위험한 위치에 전선들이 노출되어있음	□	-	X	-	/

■:있고 적합함(3점), □:있으나 적합하지 않음(2점), X:없음(1점), /:해당없음(0점)

천정 마감재는 방화 시에 비교적 안전한 방화 종이벽지 사용여부를 보았다. 그 결과 바닥과 천정 마감재는 모두 기준에 적합(3점, 100%)하였으나 벽 마감재는 도기질 타일로 마감되지 않은 곳이 8/31곳(벽지나 필름 등으로 마감)으로 평균2.74점(91.3%)으로 잘 갖추어졌으며, 천정 마감재는 2.97점(99%)으로 매우 잘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주방 조명은 모든 시설에서 적절한 밝기의 것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주방에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릇이나 냄비 등 주방용품들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장이 적절한 크기인지를 보았는데 7곳은 적절하고, 11곳은 있으나 적합하지 않은 크기이었고, 13곳은 수납장이 없어 평균 1.81점(60%)으로 꽤 낮았다.

<표 11> 조사대상 경로당 시설 주방의 현황 평가 결과

시설 번호	주방의 크기	조리대 길이	배치 순서	조리대 높이	바닥 마감재	벽 마감재	천정 마감재	조명	입식 식탁	수납장	전선 정리	합계
1	■	■	□	■	■	■	□	■	□	X	□	27
2	□	□	□	■	■	■	■	■	X	□	■	22
3	□	□	□	■	■	■	■	■	X	■	■	28
4	□	□	■	■	■	■	■	■	□	X	■	28
5	□	□	□	□	■	■	■	■	X	□	■	26
6	□	■	□	■	■	■	■	■	X	□	■	27
7	□	□	□	■	■	■	■	■	X	X	■	26
8	■	■	■	■	■	■	■	■	□	■	■	32
9	■	■	■	■	■	□	■	■	□	■	■	31
10	□	□	■	■	■	■	■	■	X	X	□	26
11	□	□	■	■	■	■	■	■	X	X	■	27
12	■	■	■	■	■	■	■	■	X	□	■	30
13	■	■	■	■	■	■	■	■	X	X	■	29
14	■	■	■	■	■	■	■	■	□	■	■	32
15	■	■	■	■	■	□	■	■	X	X	■	28
16	□	□	■	■	■	□	■	■	X	X	■	26
17	■	■	■	■	■	■	■	■	X	X	■	29
18	■	■	■	■	■	■	■	■	X	■	□	30
19	□	□	■	■	■	■	■	■	X	□	■	28
20	■	□	□	■	■	□	■	■	X	□	■	27
21	□	□	■	■	■	□	■	■	■	□	■	29
22	■	■	■	■	■	■	■	■	X	X	■	29
23	■	■	■	■	■	■	■	■	X	□	■	30
24	□	□	■	■	■	■	■	■	■	■	■	31
25	■	■	■	■	■	■	■	■	□	■	■	32
26	□	□	□	■	■	■	■	■	X	□	■	27
27	□	□	□	■	■	■	■	■	X	X	■	26
28	□	□	□	■	■	■	■	■	X	X	■	26
29	■	■	■	■	■	■	■	■	X	□	■	30
30	■	■	■	■	■	■	■	■	X	□	■	30
31	□	□	□	■	■	□	■	■	X	X	■	25
합계	2.50 (83.3)	2.48 (82.6)	2.65 (88.3)	2.97 (99.0)	3.00 (100)	2.74 (91.3)	2.97 (99.0)	3.00 (100)	1.32 (44.0)	1.81 (60.0)	2.90 (96.6)	28.19 2.57

주방에는 전선관리가 특별히 중요한데 3곳의 주방에는 가열대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전선콘센트 커버가 있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였고, 그 외 시설은 문제가 없었다.(2.9점, 96.6%)

#### 4.4. 화장실의 평가 기준과 결과

화장실의 분석 기준을 <표 12>에,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화장실의 문의 크기와 형태는 문의 폭이 적당하고 개폐가 쉬운 상태인가를 보았는데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절하여(4곳은 문의 개폐가 용이하지 못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태) 평균 2.87점(95.6%)이었다. 단독 건물로 대부분(24/31) 화장실에 창문이 있었으며, 5곳은 없고, 2곳은 창문이 있으나 고정되어 개폐가 되지 않았다.(평균 2.61점, 87%) 창문이 없으나 환기팬으로 흡배기를 할 수 있게 시설 된 곳이 3곳이고, 나머지 창문 없는 2곳은 환기팬도 없는 상태로 출입구로 환기를 하고 있었고, 고정형 창문이 설치된 2곳에는 모두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었다.

10) 경로당 조리대 작업자는 초고령 노인이 아니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 가능한 50대가 여러 노인의 식사준비를 함.



<표 12> 화장실의 분석 기준

구분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문의 크기 및 형태	폭 0.85M 이상의 문의 크기와 문의 개폐가 용이함	■	폭 0.85M 이하이거나 문의 개폐가 용이하지 않음	□	-	X	-	/
창문	위치와 크기가 적당함	■	위치와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	□	설치되지 않음	X	-	/
환기팬	설치되어 있음	■	-	□	설치되지 않음	X	-	/
남/여의 구분	남/여의 구분이 되어 있음	■	-	□	남/여의 구분이 없음	X	여성 전용 시설로 구분불요	/
안전 손잡이	설치되어 있음	■	-	□	-	X	설치되지 않음	/
비상벨	-	■	-	□	-	X	설치되지 않음	/
난방여부	바닥마감재로 적당한 재료 사용	■	-	□	난방기구 있으나 제 기능 없음	X	-	/
바닥 마감재	바닥마감재로 적당한 재료 사용	■	-	□	-	X	-	/
벽 마감재	벽 마감재로 적당한 재료 사용	■	-	□	-	X	-	/
천정 마감재	천정마감재로 적당한 재료 사용	■	천정마감재로 부적당한 재료 사용	□	-	X	-	/
조명	설치되어 있음	■	설치되어 있으나 제 기능 없음	□	-	X	-	/
세면대	사용하기 편리한 높이와 크기의 세면대	■	높낮이 조절식세면대 고장으로 높이 부적당	□	-	X	-	/

■:있고 적당함(3점), □:있으나 적당하지 않음(2점), X:없음(1점), /:해당없음(0점)

평균 점수는 1.55(51.6%)로 매우 낮았다. 화장실이 남녀 구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를 보았는데 9곳의 시설에서 남녀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남녀 모두 불편해 하여 점수는 2.33(77.6%)이었다. 변기와 세면대와 소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가 있어서 UD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보았는데 15곳의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고 16곳은 없어서 평균 1.97점(65.6%)으로 좀 낮았다. 화장실 내부에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의 설치 여부를 보았는데 모든 시설에 비상벨이 없었다.(평균 1점, 33.3%) 이용자의 연령을 감안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난방용 라지에이터는 7군데 시설의 화장실에 설치되었으나 주로 창문 아래 설치되어 난방 시 효과가 낮은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24곳은 화장실에 난방 시설이 없었는데 이용자 연령을 감안하면 난방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평균 1.23점, 41%) 바닥 마감재는 자기질 타일로 시공되어 화장실 바닥으로 적절한지를 보고, 벽은 도기질 타일로 화장실 벽체용으로 적절한지를, 천정은 습기에 강한 재료로 시공되었는지 보았다. 천정 마감재 2곳을 제외하면 모두 적절하였고, 2곳은 벽지와 나무 합판으로 되어 적절하지 못했다. 바닥, 벽 마감재 점

수는 3점(100%)으로 매우 적절했고, 천정 마감재는 2.94점(98%)으로 역시 매우 적합하였다.

<표 13> 조사대상 경로당 시설 화장실의 현황 평가 결과

시설 번호	문의 크기 및 형태	창문	환기팬	남/여의 구분	안전 손잡이	비상벨	난방 여부	바닥 마감재	벽 마감재	천정 마감재	조명	세면대	합계
1	■	■	X	/	X	X	X	■	■	■	■	■	22
2	■	■	X	/	■	X	□	■	■	■	■	■	27
3	■	■	X	■	■	X	□	■	■	■	■	■	29
4	□	■	X	■	X	X	X	■	■	■	■	■	23
5	■	■	X	■	■	X	X	■	■	■	■	□	24
6	□	■	X	/	X	X	□	■	■	□	□	■	21
7	■	■	X	■	■	X	□	■	■	■	■	■	29
8	■	■	X	/	■	X	□	■	■	■	■	■	26
9	■	■	X	■	■	X	X	■	■	■	■	□	26
10	■	■	□	X	X	X	X	■	■	□	■	□	22
11	■	■	■	X	X	X	X	■	■	■	■	■	24
12	■	X	■	X	X	X	X	■	■	■	■	■	21
13	■	■	X	X	X	X	X	■	■	■	■	■	21
14	■	X	X	■	■	X	X	■	■	■	■	■	21
15	■	■	X	■	■	X	X	■	■	■	■	■	27
16	□	■	X	X	■	X	X	■	■	■	■	■	23
17	■	□	■	■	■	X	X	■	■	■	■	■	29
18	■	■	X	X	X	X	X	■	■	■	■	■	21
19	■	X	■	■	■	X	X	■	■	■	■	■	27
20	■	X	X	■	X	X	X	■	■	■	■	■	21
21	□	■	X	■	■	X	X	■	■	■	■	■	26
22	■	■	X	X	X	X	X	■	■	■	■	■	21
23	■	■	X	■	■	X	X	■	■	■	■	■	27
24	■	□	■	■	X	X	X	■	■	■	■	■	26
25	■	■	X	■	X	X	□	■	■	■	■	■	26
26	■	■	X	X	X	X	□	■	■	■	■	■	23
27	■	X	■	■	■	X	X	■	■	■	■	■	27
28	■	■	X	■	■	X	X	■	■	■	■	■	27
29	■	■	■	■	■	X	X	■	■	■	■	■	30
30	■	■	■	■	X	X	X	■	■	■	■	■	27
31	■	■	X	X	X	X	X	■	■	■	■	■	21
합계	2.87 (95.6)	2.61 (87.0)	1.55 (51.6)	2.33 (77.6)	1.97 (65.6)	1.00 (33.3)	1.23 (41.0)	3.00 (100)	3.00 (100)	2.94 (98.0)	2.97 (99.0)	2.90 (96.6)	24.67 2.36

조명은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서 적절한 밝기의 것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1곳은 조명기구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리가 필요하였다.( 2.97점, 99%) 세면대는 대체로 적당한 상태였는데 UD를 고려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한 3곳이 문제가 되었다. 대부분의 제품이 고장으로 아주 낮게 혹은 높게 고정되어 사용하기 불편하였다.(평균 2.9점, 96.6%)

#### 4.5.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소결

체크리스트에 의한 시설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출입구에는 체크리스트 항목 중 주출입문, 야간 조명과 현관의 크기 등 문제가 없었던 3항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7항목은 있으나 적당하지 않거나 아예 없었다.

주생활 공간인 거실의 크기는 절반 이상 시설이 이용자 15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간 문제가 제시되었다.

주방 또한 여러 명의 식사준비에 작업대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곳이 반수로, 작업자 2명이 함께 작업하기 힘들었다. 시설이용이 활성화 되면 공간 크기가 문제가 될 상황이었다.

화장실은 안전 문제가 내재하였는데 UD를 고려하여 변기, 세면대, 소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품 고장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세면대는 교체하는 등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각 공간별 체크리스트 점수가 2.5점 이상은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이하점수는 설치나 관리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한다.

31곳 시설의 평균 점수가 2.5점 이하는 주출입구는 조사항목 10개 중 7항목(70.0%)으로 개선이 요구 되었다. 거실은 조사항목 14개중 4항목(28.6%)으로 주출입구 보다는 상태가 양호하였다. 주방은 조사항목 11개중 4항목(36.4%)으로 주출입구와 거실의 중간 수준이었다. 화장실은 조사항목 12개중 5항목(41.7%)으로 주출입구 다음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곳이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국공립시설을 대상으로 경로당의 건물 실태와 공간별로 이용자가 어떻게 공간을 이용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주출입구, 거실 및 휴게실, 주방, 화장실을 조사하였다. 결과를 정리하여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구립 경로당시설을 체크리스트로 분석한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주출입구	일반시설 문, 야간조명, 현관크기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일부 수리가 요구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경사로는 비교적 미흡하였음.
	안전시설 비상대피도, 비상구 점등 및 엘리베이터는 꽤 미흡하였음. 구조대는 매우 미흡하였음.
거실 및 휴게실	일반시설 이중창,바닥,벽,천정마감재,온도조절기,조명은 매우 잘 갖추어져있었고 거실의 크기, 수납장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남녀의 구분과 입식가구는 비교적 미흡하고 방의 크기는 없는 곳이 많아서 매우 미흡하였음.
	안전시설 긴급전화번호, 안전수첩, 전선정리는 매우 잘 갖추어져있었음.
주방	일반시설 바닥,벽,천정마감재,조명,배치순서,조리대높이,주방크기 등은 매우 잘 갖추어져있었고 수납장은 미흡하였고 입식식탁은 없는 곳이 많아서 매우 미흡하였음.
	안전시설 전선정리 상태는 매우 잘 갖추어져있었음.
화장실	일반시설 문의 크기,창문,벽,천정,바닥마감재,세면대는 매우 잘 갖추어져있었고 남/여의 구분은 비교적 미흡하였고 환기팬은 미흡하였고 난방여부는 대부분 안되어서 매우 미흡하였음.
	안전시설 안전손잡이는 비교적 미흡하였고 비상벨은 없는 곳이 많아서 매우 미흡하였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주출입구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비상대피관련 대피도를 갖추고, 비상구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비상벨도 설치하고 이용자의 연령을 감안해 2층 이상일 경우 구조대를 설치하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화 된 안전교육을 하도록 권고한다.

거실은 시설의 실별 크기가 크지 않고 이용자의 연령

을 고려하지 못한 입식가구의 부재로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사용자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러닝머신 등 불필요한 설비를 과감히 없애는 대신 그 공간에 사용 가능한 식탁 등의 가구를 대체하고, 누워 쉴 수 있는 가구류를 보충하는 등 이용에 편리한 가구의 적절한 보충으로 좁은 경로당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권한다.

주방은 조리대의 적절한 길이 및 조리 공간의 확보와 수납공간의 보충 등이 필요했고, 소수이지만 가열대 위에 노출된 전선정리 등의 안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권한다.

화장실은 UD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초고령자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변기와 세면대나 소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고장 난 높이 조절식 세면대를 교체(수리하여도 제품이 불안정 하여 다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었음)하여 능률적인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권한다.

종합적으로 현재의 경로당 시설은 체계가 부족하여 표준화 관리가 필요하며, 이때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현황 평가에 사용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심화된 문항이 개발되기를 기대하며,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한 종합적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김류하, 경로당 주거 공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성북구소계 경로당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04
2. 김선영, 아파트 경로당의 공간구성 특성과 이용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인제대 석사논문, 2012
3. 김지영, 노인정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동작구 노인정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1997
4. 박성주, 경로당 이용실태 개선 방안 연구- 사천시를 중심으로, 전주산업대 석사논문, 2010
5. 황원경,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의 지하철 역 환경평가와 개선방안, 한양대 박사논문, 2001
6. 김선영 · 오찬옥, 아파트 경로당의 공간구성 특성과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호, 2013
7. 배정이 · 정상태 · 노맹석 · 손혜숙 · 홍주희 · 염석란 · 김태구 · 마창수 · 김윤경, 부산광역시 경로당의 안전시설 현황 조사, 2011
8. 신지현, 신경주, 공간클래보레이선이 적용된 상업공간사례검토-헤이리 마을의 4사례를 통하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호, 2015
9. 유영상 · 김윤아 · 신경주, 서울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의 현황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호, 2013
10. 日本法務省, 日本の'高齢者と身体障害者等が円滑に利用できる特定建築物の建築促進に関する法律', www.moj.go.jp
11. 통계청, www.kostat.go.kr
12.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4. 법제처, 법령/해석정보,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
15. 보건복지부, www.mw.go.kr

[논문접수 : 2015. 06. 30]  
 [1차 심사 : 2015. 07. 20]  
 [2차 심사 : 2015. 07. 31]  
 [3차 심사 : 2015. 08. 06]  
 [게재확정 : 2015. 08. 07]